

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감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가. 근무시간 외 조사 시 관계자 동의를 의무화함(안 제12조)
- 나. 디지털 자료 수집·조사 관련 절차를 마련함(안 제13조의2)
- 다. 재심의 사건 접수 시 담당 감사인을 변경하고, 재심의 결과가 원 감사처분보다 불이익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20조 제4항 및 제5항)
- 라. 감사증거서류 중 확인서, 질문서, 문답서 양식을 개선함(별지서식 제6호 내지 제8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6층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
- 담당자(이메일) : 김용선 차장(yongsun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051-955-5418
- 팩스번호 : 051-955-54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신속하게 감사절차를 개선하여 감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